

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1434
------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17. 9.

제 출 자 : 달성군수

1. 의결주문

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- 가.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지번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개정하고,
- 나.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수탁대상자 범위를 개정하며,
- 다.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위탁 계약기간을 개정하여 상위 법령과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안 제2조(명칭 및 위치) 제2항 개정
 - 주소를 논공읍 남리 717-4번지에서 논공읍 논공로 242로 변경
- 나. 안 제7조(운영) 제1항 개정
 - 수탁대상기관을 장애인단체에서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으로 변경
- 다. 안 제7조(운영) 제5항 개정
 - 위탁계약 체결시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도로명주소법」 제21조(도로명주소의 사용 의무)

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

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1조의2

나. 예산조치 : 별도예산 필요 없음

다. 기타사항

(1)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 참조

(2) 성별영향평가 : 원안 동의

(3) 부패영향평가 : 원안 동의

(4)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
(5) 입법예고

(가) 예고기간 : 2017. 7. 31 . ~ 8. 21.

(나) 예고결과 : 의견 없음

(6) 비용추계서 : 해당사항 없음

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“남리 717-4번지”를 “논공로 242”로 한다.

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“3년”을 “5년”으로 한다.

① 복지관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가 운영하되,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복지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운영(위탁받은 법인을 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하게 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명칭 및 위치)</p> <p>복지관의 명칭은 “대구광역시달성군장 애인복지관”이라 하고 대구광역시 달성 군 논공읍 <u>남리 717-4번지</u>에 둔다.</p> <p>제7조(운영)</p> <p>① <u>복지관은 대구광역시달성군수(이하 “군수” 라 한다)가 운영하되,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복지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장애인 당사자단체(이하 “수탁자” 라 한다)에게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.</u> 이 경우 조례 제1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의 발생으로 위탁이 취소될 때에는, 사회복지법인, 비영리법인 · 단체 또는 기타 장애인 당사자 단체에게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② ~ ④ (생략)</p> <p>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군수와 수탁자가 필요한 사항을 위탁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<u>3년</u>으로 한다. 다만,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1조의2 및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 할 수 있다.</p>	<p>제2조(명칭 및 위치)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<u>논공로 242</u> -----.</p> <p>제7조(운영)</p> <p>① <u>복지관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수(이하 “군수” 라 한다)가 운영하되,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복지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운영(위탁받은 법인을 이하 “수탁자” 라 한다)하게 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<u>5년</u> -----.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

참고 1 상위 및 관계 법령(발췌)

□ 「도로명주소법」

제21조(도로명주소의 사용 의무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법인 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도로명주소를 표시하거나 사용하여야 한다. 다만, 도로명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07.5.17., 2009.4.1.>

1. 가족관계등록부, 주민등록, 건축물대장 등 각종 공부상의 등록기준지 표시 또는 주소 표시
2. 각종 인·허가 등 행정처분서 주소표시
3. 공공기관 주소의 위치표시
4. 공문서 발송시 주소표시
5. 위치안내표시판 제작과 위치표시 및 위치안내
6. 인터넷 홈페이지의 위치안내
7. 그 밖에 주소 및 위치표시와 관련된 사항

□ 「사회복지사업법」

제34조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

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(이하 "시설"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11.8.4.>

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·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·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. <개정 2011.8.4., 2012.1.26., 2016.2.3.>

1.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2. 제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

③ 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·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. <신설 2011.8.4.>

④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1.8.4., 2012.1.26.>

⑤ 제4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·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1.8.4., 2012.1.26.>

□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

제21조의2(시설의 위탁)

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 <개정 2004.9.6., 2012.8.3.>

1.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
2. 위탁계약기간
3.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
4.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
5.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- 5의2.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
6.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
7.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. 다만,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. <개정 2004.9.6., 2012.8.3., 2016.8.3.>

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 <신설 2016.8.3.>

1.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
2.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

[제23조에서 이동 <2012.8.3.>]